

#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

의안 번호	163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12. 6. 13

제출자 : 유인환 의원 외 5인

## 1. 주 문

가.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요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.

나. 심사기간은 2012년 6월 21일, 1일간으로 한다.

## 2. 제안이유

가. 평창군수가 발의한 조례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및 평창군의회위원회 조례 관계규정에 따라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위원 6인으로 구성한다.

## 3. 참고사항 : 없음

# 심 사 계 획

## 1. 활동목적

- 심도있는 심사로 최고 의결기관으로서의 역할 강화
- 신속한 의사진행

## 2. 심사안건

-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
-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
- 평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- 평창군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- 평창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- 평창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
- 평창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
- 평창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- 평창군 이장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
- 평창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- 평창군 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
- 평창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예방 및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- 평창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- 평창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와 수집·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안
- 평창군 위생업소 지원 조례안

- 평창군 농어업회의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
- 2018성공개최 평창군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안

### 3. 활동기간

- 2012년 6월 21일, 1일간으로 한다.

### 4. 구 성

- 장문혁 의원, 유인환 의원, 함명섭 의원, 박종욱 의원,  
이정율 의원, 정문섭 의원

## 5. 운영계획

일 시	차 수	내 용	비 고
2012. 6. 21 (목)	제1차 조례특위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</li> <li>2.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</li> <li>3. 평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</li> <li>4. 평창군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</li> <li>5. 평창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</li> <li>6. 평창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</li> <li>7. 평창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</li> <li>8. 평창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</li> <li>9. 평창군 이장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</li> <li>10. 평창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</li> <li>11. 평창군 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</li> <li>12. 평창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예방 및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</li> <li>13. 평창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</li> <li>14. 평창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와 수집·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안</li> <li>15. 평창군 위생업소 지원 조례안</li> <li>16. 평창군 농어업회의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</li> <li>17. 2018성공개최 평창군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안</li> </ol>	